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93 발의연월일: 2025. 2. 4.

발 의 자 : 허 영 · 김문수 · 윤준병

주철현 • 박민규 • 황 희

임호선 · 진성준 · 전재수

한민수 정일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안보, 진행중인 재판 혹은 수사, 감독·검사·시험, 사생활의 비밀,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공공기관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 도적으로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수행의 공정성,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현행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 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4 조제3항).
- 나.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이를 위반할 시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 조의2 및 제6조의3).
- 다.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 외하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 본문 중 "정보에"를 "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
- 2. 방첩(산업경제정보 유출,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 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), 대테러,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
- 3. 「형법」 중 내란의 죄, 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 중 반란의 죄, 암 호 부정사용의 죄,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
- 4.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
- 5.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
 제6조의2 중 "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,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"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정보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행위
- 2.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
- 3.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
- 4. 정보공개 청구의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정보공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징계)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"국민생활에"를 "국민의 생명·안전을 비롯한 국민생활에"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"를 "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
제4조(적용 범위) ①・② (생	제4조(적용 범위) ①・② (현행과							
략)	같음)							
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	3							
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								
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								
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								
집하거나 작성한 <u>정보에</u> 대해	<u>정</u> 보 중 다음							
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				
다. 다만, 제8조제1항에 따른	정보에							
정보목록의 작성·비치 및 공								
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								
한다.								
<u><신 설></u>	1.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							
<u><신 설></u>	2. 방첩(산업경제정보 유출, 해							
	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							
	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							
	함한다), 대테러, 국제범죄조							
	직에 관한 정보							
<u><신 설></u>	3. 「형법」 중 내란의 죄, 외							
	환의 죄, 「군형법」 중 반란							
	의 죄, 암호 부정사용의 죄,							
	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규정							
	된 죄에 관한 정보							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의2(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)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(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)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,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,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- 4. 「국가보안법」에 규정된 죄 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 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 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
- 5.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

제6조의2(정보공개 담당자의 의 무) -----

-----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정보공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행위
- 2.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고의 적으로 지연하는 행위
- 3.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청구 에 대해 위법하게 공개를 거

- 제7조(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) ① | 7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 기.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 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 -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- 2. ~ 4. (생 략)
 - ② (생 략)
- 기관이 보유・관리하는 정보는

부항	누는	행위

4. 정보공개 청구의 취하를 유 도하는 행위

제6조의3(정보공개 의무의 위반 에 대한 징계) 공공기관의 장 은 제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저	173	조(정	보의	븨	사	전	적	-	공기	/ }	딍	-)	1)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	_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	_
															-
															-
									-						-
															-

- 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1. 국민의 생명·안전을 비롯한 국민생활에-----
 - 2. ~ 4. (현행과 같음)
 - 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공공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① ----

공개 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<u>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</u> <u>다</u>.

- 1. ~ 8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